국토교통부	보 도 참 고	
주거복지로드맵	배포일시	2018. 5. 17.(목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주택정비과	담 당 자	·과장 유삼술, 사무관 유상철, 주무관 김준영 ·☎ (044) 201-3392, 3386
보 도 일 시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헤럴드 경제 “아니면 말고, 예정액 통지하지 말라” .. 관련

□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예정액 통지는 **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규정된 절차**로서, **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꼭 필요**한 중요한 절차입니다.

○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통지된 부담금 예정액을 토대로 **조합원별 부담 규모·시기를 정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반영**하여야 하며(도시정비법 제74조제6호), 조합원은 이를 근거로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수준을 사전에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.

-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아파트의 **철거 및 착공이 진행되고 더 이상 사업을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진입**하기 때문에, 그 전에 조합원은 사업 추진으로 인해 자신이 부담해야하는 **부담금의 규모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**한 것입니다.

○ 조합원은 통지된 부담금 예정액을 근거로 **분양신청 여부를 결정**할 수 있고, 조합원별 부담금 규모가 최종 확정되는 **관리처분계획 총회에서의 합리적인 의결권 행사**도 가능할 것입니다.

□ 부담금에 대한 예정액 통지 절차를 폐지할 경우 조합원은 **부담금 규모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**에서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**철거에 동의하게 되는 불합리**가 발생하게 됩니다.

○ 또한, **사전예고 없이 종료시점에 예상 밖의 큰 부담금**이 확정 부과 처분될 경우 자금 마련의 어려움 등 더욱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담금 **예정액 통지 절차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**고 볼 것입니다.

□ 정부는 앞으로 **전문기관(한국감정원) 업무지원·업무매뉴얼 정비·지자체 교육 등을 통해** 예정액 통지가 보다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헤럴드 경제, 5. 17.) >

◈ "'아니면 말고'"라면 하지말라".....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반발 확산
- 미래가치 산정방식에 문제,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절차 없애라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유상철 사무관(☎ 044-201-339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